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 74

제출일자 : 2020.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내용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나. 위 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다. 사업내용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마. 현 민간위탁 현황

○ 수탁자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바. 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조합원(농가, 농작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인력알선에 유리
- 관외인력 유치로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3조, 6조

다. 향후계획

- 2020. 9. : 거창군의회 동의 요구안 제출
- 2020. 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0.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라. 예산조치 : 위탁운영비 연 150백만원

마. 위탁 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운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2조(적용범위)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현황

- 센터의 시설과 위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120,000)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2014년 최초 위탁
- 수탁자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변동규)

합계(명)	농가	농작업자	현물출자자	직원	자원봉사자
457	186	265	4	1	1

- 추진근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 위치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사무실



농업근로자 숙박시설

□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연도별	위탁비(천원)	운영현황
2014	90,655(균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최초 위탁운영
2015	106,555(국 15,900 균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6	120,655(국 30,000 균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7	140,655(국 50,000 균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8	150,000(균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2019	150,000(도 36,000 균 114,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2020	150,000(도 30,000 균 120,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 2014년 ~ 2020년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 연도별 사업실적

(2020. 7월말 기준)

연도별	농작업 알선실적 참여인원(명)			출퇴근 차량운행						숙 소 이용자 (명)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2014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	-	숙 소
2015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	-	공 사
2016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500
2017	11,013	9,822	1,191	305	3,491	284	2,840	21	651	540
2018	10,128	9,358	770	240	2,700	225	2,250	15	450	320
2019	10,968	10,206	762	205	2,232	191	1,910	14	322	300
2020	7,665	6,995	670	88	1,090	74	740	14	350	320

○ 연도별 참여농가 현황

(2020. 7월말 기준)

연도별	주요작물별 현황				
	계	사과	오미자	딸기	기타
2014	107	85	6	10	6
2015	91	71	2	10	8
2016	116	96	3	10	7
2017	115	89	4	10	12
2018	98	80	2	10	6
2019	102	86	-	10	6
2020	76	63	-	8	5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위탁금액 : 150백만원(2021년)
- 대 상 : 위탁자 『거창군』, 수탁자 『선정기관』
- 위탁사무
 - 가.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나.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 다.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사업
 - 숙식제공,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보험가입사업, 안전용품 제공
 -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주요내용
 - 협약 보증을 위하여 공증 시행
 - 위탁사업비는 매년 책정하되 연 사업비는 반기별 분할 지급
 - 정산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협약 해지사유 발생 시 협약 해지

□ 향후 추진계획

- 2020. 9. : 거창군의회 동의요구안 제출
- 2020. 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0.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